제 1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일자	2022. 08. 11.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
제출일자	2022. 08. 11.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가. 사전검토 대상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주 설정(안 제82조의2 신설)

○ 시설·설비의 방사화 위험도, 시설의 복잡성, 차폐성능 등을 결정하는 빔 종류, 에너지 출력 등을 기준으로 대상 명확화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추가(안 별표7 개정)

○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 14의2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위탁

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154조 제6항 1호)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위탁업무 조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사전검토 대상·범위 및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안 제60조의2 신설)

○ 사전검토 신청 서식 신설(제1항 및 별지 제51의2호 서식)

○ 사전검토 대상 및 세부작성지침 명확화(제2항, 제3항)

나. 사전검토 신청 기준일 명시(안 제60조의2 제4항)

○ 사전검토 신청 기준인 공사착공일은「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함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8-9월), 규제심사(9-10월), 법제처심사(11-12월), 시행('23년 3월)

【붙임1】「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붙 임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부터 제82조의4까지를 각각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5까지로 하고,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원자의 질량수가 4이하이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이하 “핵자”라 한다)의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거나,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면서 빔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82조의3(종전의 제82조의2)제1항, 같은 조(종전의 제82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3조의2제3

항”을 “법 제5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82조의4(종전의 제8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7항”을 “법 제53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82조의5(종전의 제82조의4)제1항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법 제53조의2제6항제1호”를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3조의2제6항제2호”를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의2제7항”을 “법 제53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154조제6항제1호 중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건강”으로 한다.

별표 7 제7호사목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별표 12 제2호구목 중 “법 제53조의2제1항”을 “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누목 중 “법 제53조의2제3항”을 “법 제53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두목 중 “법 제53조의2제4항”을 “법 제53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루목 중 “법 제53조의2제5항”을 “법 제53조의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무목 중 “법 제53조의2제6항”을 “법 제53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원자의 질량수가 4이하이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이하 “핵자”라 한다)의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거나,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면서 빔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82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소마다 방사선안전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법 제53조의3제1항----------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 또는 해임 후 선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 -------.
1. 법 제5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개시 전	1. 법 제53조의3제1항 ----------
2. 법 제5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	2. 법 제53조의3제1항 ----------
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법 제53조의3제3항-------- ----------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2제7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3조의3제7

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① 법 제53조의3제1항----------.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법 제53조의2제6항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로 인한 경우 연간 90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53조의3제6항제1호----------.
2. 법 제53조의2제6항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의3제6항제2호----------
③ 법 제53조의2제7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③ 법 제53조의3제7항----------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생 략) ④ (생 략)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생 략)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이용이 <u>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u>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생 략) ⑦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 <u>건강</u>-------- ---------- ---------- 2.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제154조제2항 관련)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치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 신고

아. ~ 카. (현행과 같음)

7의2. (현행과 같음)

8. ~ 11. (현행과 같음)

11의2. 법 제111조제1항제14의2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8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개정항목만 발췌)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구.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300	450	900
누.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1호	200	300	600
두. 법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루. 법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2호	200	300	600
무. 법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9조 제1항제7호	200	300	600

붙 임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은 별지 제51의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작성지침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중 “영 제82조의2제3항”을 “영 제82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2조의3제3항”을 “영 제82조의4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의4제1항 중 “영 제82조의4제1항”을 “영 제8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2조의4제4항”을 “영 제82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51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 중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으로, 같은 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5호의3서식 중 “제53조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제1항”을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은 별지 제51의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작성지침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한다.
제68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2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제68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

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의2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3제3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82조의4제3항----------.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2조의4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82조의5제1항----------. ② 영 제82조의5제4항----------.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의2호서식]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사전검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통보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2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선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해임일자	
변경					
·					
해임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2.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통보	→	결과확인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의3서식]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		[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면허 또는 자격사항	취급경력	교육이력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대리기간					
	대리사유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 (서명 또는 인)

999210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이경용 과 장	(02) 397 - 7330
최성규 사무관	(02) 397 - 7340